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2. 8.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김기열 의원 등 5명(원종진, 박종길, 박정환, 조복희)
- 발의일자: 2022. 1. 25.
- 회부일자: 2022. 1. 27.
- 상정 및 의결: 제28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2. 8.)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되고, 현행 조례에서 준용 중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되어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제정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의원의 직무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자 '직무'에 대한 제한적 정의 삭제(안 제2조제1호)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제3조~제5조 및 제11조, 별지 제1호서식)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정비(안 제2조 및 제3조)

4. 참고사항(관계법령 등)

-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비용추계서: 비대상
- 입법예고(2022. 1. 25. ~ 2022. 2. 4.) 결과: 의견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으로 의원의 비회기 중 상해 등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직무 제한 규정을 삭제 함에 따라 ‘직무’ 정의 조문을 삭제하고,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발전을 위해 「공무원 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따로 제정 되었기에 이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등 미비점을 정비하였음.
- 이상과 같이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의원의 안정된 직무 활동 보장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 집행부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이 「지방자치법」의 시행일(2022. 1. 13.) 이후 개정됨에 따라, 직무 범위를 상위법 시행일부터 적용하기 위해 부칙 제2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의견으로 사료됨.

6. 질의 · 답변 및 토론 요지

- 개정 조례안이 「지방자치법」의 시행일(2022. 1. 13.) 이후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적용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를 부칙에 신설하는 것이 타당함.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첨부서류: 위원회 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본문을 삭제하고,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 이후 직무상 사망하거나 상해 등을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수정조문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부칙	부칙
<u>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u>	<u>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u> <u>제2조(보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 이후 직무상 사망하거나 상해 등을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u>